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57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최민희 · 이주희 · 김남근
김우영 · 박해철 · 이광희
채현일 · 이재강 · 노종면
김 현 · 장종태 · 황정아
김문수 · 양부남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침해사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⑨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

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의 대응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7항 및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u> <u>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u> <u>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⑧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소</u>
<u><신설></u>	

<u><신 설></u> <u><신 설></u>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u>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u> <u>2. 침해사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u> <u>⑨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u> <u>⑩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
--	---

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
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
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
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
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발생하
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
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
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
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발생 여부 및 원인을-----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
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
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⑤ (생 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⑧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 ----- ----- --소속 공무원----- -----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 ----- ----- ----- ----- -----. ⑦·⑧ (현행과 같음)
---	---